

1. '26년 8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는 명예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추천해야 하는지?

- ☐ 사업장에서 명예감독관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님
- ☐ 근로자대표가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하는 경우,
 - 고용노동부장관(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)은 그 추천된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의무적으로 위촉하여야 함

2.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사업장도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?

- ☐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음

3.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?

- ☐ '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'을, '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'가 추천할 수 있음(법 제2조제5호)
 -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투표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 등으로 선출하고, 이후 명예감독관 추천이 가능함

4. 근로자대표가 자신 또는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를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?

- ☐ 근로자대표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신을 명예감독관으로 추천 가능함
- 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제1호의2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회에 해당되므로 명예감독관 해촉사유에 해당함
 -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가능

5. 사내 도급 사업장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대표가 하청 소속 근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?

- ☐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으므로, 타 사업주의 근로자를 추천할 수는 없음

6.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는지?

- 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장별 명예감독관 인원제한을 두지 않음

7. 명예감독관 추천시 사업주 동의 또는 의견청취가 필요한지?

- ☐ 근로자대표가 소속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때 사업주 동의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
 -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(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)이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때에는 명예감독관, 근로자대표 및 사업주에게 결과를 통보

**8. 명예감독관의 산안법상 활동이 유급시간으로 인정 되는지?
근로시간면제자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지?**

- ☐ 명예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활동 시간은 유급인정 대상이 됨
- ☐ 다만, 명예감독관이 근로시간면제자인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의 활동은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됨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

9.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시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감독 참여가 불가한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지?

- ☐ 명예감독관이 없거나, 있더라도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나 근로자대표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나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음

10. 연합단체 노동조합, 사업주단체, 산재예방단체 등 단체가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활동이 사내 명예감독관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?

- 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내 명예감독관은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할 수 있고,
 - 연합단체 노동조합, 사업주단체, 산재예방단체 등의 단체가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할 수 있음

【 별지 제1호 서식 】

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·위촉동의서

〈 추천 서 〉

아래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.

성명 (성별)						생년월일	
소속 및 직책		직종	☐ 생산직 ☐ 사무직 ☐ 기타	노조원 여부		입사일자	
사업장 (단체) 개요	사업장명 (단체명)					사업종류	
	소재지				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	전화	

년 월 일

추천기관명:

전화:

소재지:

근로자 대표자(또는 단체 대표자) 성명:

(서명 또는 날인)

〈 위촉동의서 〉

위 본인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:

(서명 또는 날인)
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: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증명사진 2장 또는 디지털 파일

현행	개정안
제23조(명예산업안전감독관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3조(명예산업안전감독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(이하 이 조에서 “명예산업안전감독관”이라 한다)을 추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③ 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(이하 “근로감독관”이라 한다)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(이하 “명예산업안전감독관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	④ -----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
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

<신 설>

2. ~ 4. (생략)

-----.

1. ----- 제32조제1항제1호-----

1의2.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, 제64제제1항제2호에 따른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1. (생략)

2.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

②·③ (생략)

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명예산업안전감독관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4조(추천 등)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명예감독관 추천·위촉동의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 2. 증명사진 2장 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, 영 제32조제1항제2호·제3호·제4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. 제5조(위촉 등)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.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	제4조(추천 등)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명예감독관 추천·위촉동의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 2. 증명사진 2장(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제5조(위촉 등)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을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② ----- 영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-----

현행	개정안
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③·④ 삭제 ⑤ 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<u>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.</u>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----- ----- -----. ③·④ 삭제 ⑤ ----- ----- 영 제33조의 해촉 사유에도 해당----- ----- -----. ⑥ (현행과 같음) ⑦ <u>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, 추천인(영 제32조제1항의 근로자대표, 노동조합, 단체 중 하나를 말한다)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(영 제32조제1항제1호인 경우에 한정한다)에게 위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/u>
제6조(해촉통보 등) ① (생략)	제6조(해촉통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<단서 삭제></u>

현행	개정안
<u>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<u>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, 그 임기는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 제14조(재검토기한 3년) (재검토기한)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<u>2020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<u><삭 제></u> 제14조(재검토기한) <u>고용노동부장관</u>은 ----- ----- <u>2027년 1월 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부 칙 이 예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